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제342회 임시회
2015. 9. 11.(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9
----------	-----

2015. 9. 11.(금)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봉희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5년 8월 24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8월 25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9월 7일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봉희 의원)

가. 제안이유

- 2015년 7월 1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실이 신설되고, 이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난안전상황실장’ → ‘재난상황팀장’으로 변경(안 제7조제3항)
- ‘안전행정부장관’ →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안 제13조제3항)
- 기타 조문 정비 등(안 제2조,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김학두)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라 소관부서 조례의 직위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라 소관부서 조례의 직위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반활동”을 “모든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발생시”를 “발생 시”로, “제반”을 “모든”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상황팀장

제8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을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재난을”을 “재난업무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하는”을 “할”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때에는 별표 8의 지원금액”을 “경우에는 별표 8의 지원 금액”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각각 별표 및 별지와 같이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u>제반활동을</u>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 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p> <p>6. "대응"이란 재난 <u>발생시</u>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u>제반</u> 활동을 말한다.</p> <p>7.·8.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u>모든 활동</u>----- ----- -----.</p> <p>6. -----<u>발생 시</u>----- ----- ----- ----- -----<u>모든</u>----- -----.</p> <p>7.·8. (현행과 같음)</p>
<p>제6조(운영체제 및 실무반 편성) 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u>실무반원</u>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6조(운영체제 및 실무반 편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경우에는</u>----- ----- -----.</p> <p>④ (현행과 같음)</p>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② (생략)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 4. (생략)

제8조(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6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9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생략)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조(시·군 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② (생략)

③ 시·군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재난상황팀장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

-----경우에는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없을 때에는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시·군 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② (생략)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7조(구성·운영) ①·② (생략)

③ 재난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주관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생략)

제18조(소집 등) ① 재난대책본부회

-----경우에
는 -----

-----.

제13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경우에는 국민안전
처장관 -----

-----.

④ -----

-----경우에는 -

-----.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재난업무를 -----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소집 등) ① -----

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9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8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④ (생략)

-----할-----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우에는 별표 8의 지원 금액-
-----.

③·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충청북도 주관부서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교육부	4.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정책기획관
외교부	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국제통상과
법무부	6.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관리과
국방부	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정책과
국민안전처	8.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 우리 도 '오창 신도시' 해당	균형발전과
행정자치부	9. 정부중요시설(도 청사) 사고	회계과
문화체육관광부	10.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11.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12.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관광항공과 <small>*필요시 재난관리과 협조</small>
농림축산식품부	13. 가축 질병 14. 저수지 사고	축산과 유기농산과
산업통상자원부	15.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6. 원유수급 사고 17. 원자력안전 사고(과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18. 전력 사고 19.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small>*필요시 차수방재과 협조</small>
보건복지부	20. 감염병 재난 21. 보건의료 사고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

환경부	22.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3.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24.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5.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6. 황사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환경정책과
고용노동부	27.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일자리기업과
국토교통부	28. 고속철도 사고 29.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30. 도로터널 사고 31.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32. 육상화물운송 사고 33. 항공기 사고 34.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교통물류과 치수방재과 도로과 수질관리과 교통물류과 관광항공과 <small>*필요시 교통물류과 협조</small> 관광항공과
해양수산부	35.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6. 조수(潮水)	수질관리과 환경정책과
금융위원회	37.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경제정책과
문화재청	38.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산림청	39. 산불 40. 산사태	산림복지과 산림복지과
국민안전처	41. 화재 42. 위험물 사고 4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4. 다중 이용건축물 대형사고(붕괴) 45.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46. 지진 47. 화산 48. 낙뢰 49. 가뭄	소방본부 소방본부 재난관리과 건축문화과 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2]<개정 2015. 7. 1>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지원관	재난안전실장
통 제 관	재난안전실장
담 당 관	재난상황팀장(재난관리과장)
실 무 반	재난안전상황실에 소속된 재난관리과 소속 공무원이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

비고: 1. 준비단계는 재난관리과 소속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제6조제1항제2호 관련)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호우·대설주의보(3개 시·군 이상 발효시)

호우·대설경보(1개 시·군 이상 발효시)

나. 호우·대설·태풍 등: 예비특보 발효시

2. 실무반 편성 : 30+α+β명

<small>통제관</small>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	○ 본부장, 차장 보좌		
<small>담당관</small>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30+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	반장(1)	담당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α)	○ 재난상황관리반(4) - 재난안전상황실 (1) - 상황근무자 - 안전정책과(1) - 재난수습 주관부서(2) ○ 기상청, 충북지방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자체 상황근무	
	상황보고서 작성 (2+α)	○ 재난수습 주관부서(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2+α)	○ 재난수습 주관부서(2)	
	행정지원 (1+α)	○ 총무과(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20+α명)	긴급생활안정지원	○ 복지정책과(1+α)	
	재난현장환경정비	○ 환경정책과(1+α)	
	긴급통신지원	○ 정보통신과(1+α)	
	시설응급복구	도로	○ 도로과(1+α)
		농수산시설	○ 유기농산과(1+α)
		축산	○ 축산과(1+α)
		하천	○ 치수방재과(1+α)
		문화관광체육주택 등	○ 문화예술과(1+α), 건축문화과(1+α)
		상하수도시설	○ 수질관리과(1+α)
		투자유치사업	○ 투자유치과(1+α)
	에너지기능복구	○ 경제정책과(1+α)	
	재난수습홍보	○ 공보관(1+α)	
	물자관리및지원지원	○ 재난관리과(1+α), 치수방재과(1+α)	
	교통대책	○ 교통물류과(1+α)	
	의료방역	○ 보건정책과(1+α)	
	자원봉사관리	○ 자치행정과(1+α)	
사회질서유지	○ 충북지방경찰청(1+α)		
수색구조구급	○ 소방본부(1+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3. 근무방법

가. 상황보고서 작성: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행정지원: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기능 실무반(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호우·대설경보(3개 시·군 이상 발효시)

나. 태풍: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35+a+β명

통제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35+a+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5+a명)	반장(1)	담당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9+a)	○ 재난상황관리반(9+a) - 재난안전상황실 (2) - 상황근무자 - 안전정책과(1), 재난관리과(1) - 재난수습 주관부서(2) - 기상청(1), 충북지방경찰청(1), 국립공원관리공단(1) ○ 유관기관(a명) - 여름철: a명(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 겨울철: a명(한국도로공사)	
	상황보고서 작성 (2+a)	○ 재난수습 주관부서(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2+a)	○ 재난수습 주관부서(2)	
	행정지원 (1+a)	○ 총무과(1+a)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20+ a명)	긴급생활안정지원	○ 복지정책과(1+a)	
	재난현장환경정비	○ 환경정책과(1+a)	
	긴급통신지원	○ 정보통신과(1+a)	
	시설응급복구	도로	○ 도로과(1+a)
		농수산시설	○ 유기농산과(1+a)
		축산	○ 축산과(1+a)
		하천	○ 치수방재과(1+a)
		문화관광체육주택 등	○ 문화예술과(1+a), 건축문화과(1+a)
		상하수도시설	○ 수질관리과(1+a)
		투자유치사업	○ 투자유치과(1+a)
	에너지기능복구	○ 경제정책과(1+a)	
	재난수습홍보	○ 공보관(1+a)	
	물자관리및지원지원	○ 재난관리과(1+a), 치수방재과(1+a)	
	교통대책	○ 교통물류과(1+a)	
	의료방역	○ 보건정책과(1+a)	
	자원봉사관리	○ 자치행정과(1+a)	
사회질서유지	○ 충북지방경찰청(1+a)		
수색구조구급	○ 소방본부(1+a)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3. 근무방법

가. 상황보고서 작성: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행정지원: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기능 실무반(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광역적인 호우·대설경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

나. 태풍: 광역적인 태풍경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

2. 실무반 편성 : 41+a+β명

통제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41+a+β명		
상황관리 총괄반 (21+a명)	반장(1)	담당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1+a)	○ 재난상황관리반(11+a) - 재난안전상황실 (2) - 상황근무자 - 안전정책과(1), 재난관리과(1) - 재난수습 주관부서(4) - 기상청(1), 충북지방경찰청(1), 국립공원관리공단(1) ○ 유관기관(a명) - 여름철: a명(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 겨울철: a명(한국도로공사)	
	상황보고서 작성 (3+a)	○ 재난수습 주관부서(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5+a)	○ 재난수습 주관부서(5)	
	행정지원 (1+a)	○ 총무과(1+a)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20+a명)	긴급생활안정지원	○ 복지정책과(1+a)	
	재난현장환경정비	○ 환경정책과(1+a)	
	긴급통신지원	○ 정보통신과(1+a)	
	시설 응급 복구	도로	○ 도로과(1+a)
		농수산시설	○ 유기농산과(1+a)
		축산	○ 축산과(1+a)
		하천	○ 치수방재과(1+a)
		문화관광체육주택 등	○ 문화예술과(1+a), 건축문화과(1+a)
		상하수도시설	○ 수질관리과(1+a)
		투자유치사업	○ 투자유치과(1+a)
	에너지기능복구	○ 경제정책과(1+a)	
	재난수습홍보	○ 공보관(1+a)	
	물자관리및지원지원	○ 재난관리과(1+a), 치수방재과(1+a)	
	교통대책	○ 교통물류과(1+a)	
	의료방역	○ 보건정책과(1+a)	
	자원봉사관리	○ 자치행정과(1+a)	
	사회질서유지	○ 충북지방경찰청(1+a)	
수색구조구급	○ 소방본부(1+a)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3. 근무방법

가. 상황보고서 작성: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행정지원: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기능 실무반(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사회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32+ α+ β명

통제관 (재난수습주관부서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수습주관부서 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32+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2+α명)	반장(1)	담당관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7+α)	○ 재난상황관리반(7+ α) - 재난안전상황실 (2) - 상황근무자 - 안전정책과(1), 재난관리과(1) - 재난수습 주관부서(3)	
	상황보고서 작성 (2+α)	○ 재난수습 주관부서(2)	
	행정지원 (2+α)	○ 총무과(1+ α), 재난수습 주관부서(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20+ α명)	긴급생활안정지원	○ 복지정책과(1+ α)	
	긴급통신지원	○ 정보통신과(1+ α)	
	시설 응급 복구	도로	○ 도로과(1+ α)
		농수산시설	○ 유기농산과(1+ α)
		축산	○ 축산과(1+ α)
		하천	○ 치수방재과(1+ α)
		문화관광체육주택 등	○ 문화예술과(1+ α), 건축문화과(1+ α)
		상하수도시설	○ 수질관리과(1+ α)
		투자유치사업	○ 투자유치과(1+ α)
	에너지기능복구	○ 경제정책과(1+ α)	
	물자관리및자원지원	○ 재난관리과(1+ α), 치수방재과(1+ α)	
	교통대책	○ 교통물류과(1+ α)	
	의료방역	○ 보건정책과(1+ α)	
	재난현장환경정비	○ 환경정책과(1+ α)	
	자원봉사관리	○ 자치행정과(1+ α)	
	사회질서유지	○ 충북지방경찰청(1+ α)	
	수색구조구급	○ 소방본부(1+ α)	
재난수습홍보	○ 공보관(1+ 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 비고: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연재난 실무반 기능과 역할 (제6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담 당 업 무	
통제관	본부장·차장 보좌	
담당관	본부장·차장 및 통제관 보좌	
상 황 관 리 총 괄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 TV 방송 모니터링
	상황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주요인사 재난안전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 국회·도의회 관련 보고서 작성 ○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 인명피해 상황관리 ○ 재산피해 상황관리 ○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난대책본부회의 개최 ○ 현장상황관리관 및 재난현장 대응인력 파견·관리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비상근무 단계 결정 ○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 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 화상회의 준비·운영
	행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구 분	담 당 업 무
긴급생활 안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재난현장 환경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수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 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 육상 및 수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 각 부처 및 시·도, 시·군 복구현황 파악
긴급 통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 각 부처 및 시·도, 시·군 복구현황 파악
시설 응급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각 부처 및 시·도, 시·군 복구현황 파악
에너지 기능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각 부처 및 시·도, 시·군 복구현황 파악
재난수습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 중앙 및 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송출 및 재난공보담당관 운영 ○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 국가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교통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지역 수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 수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 수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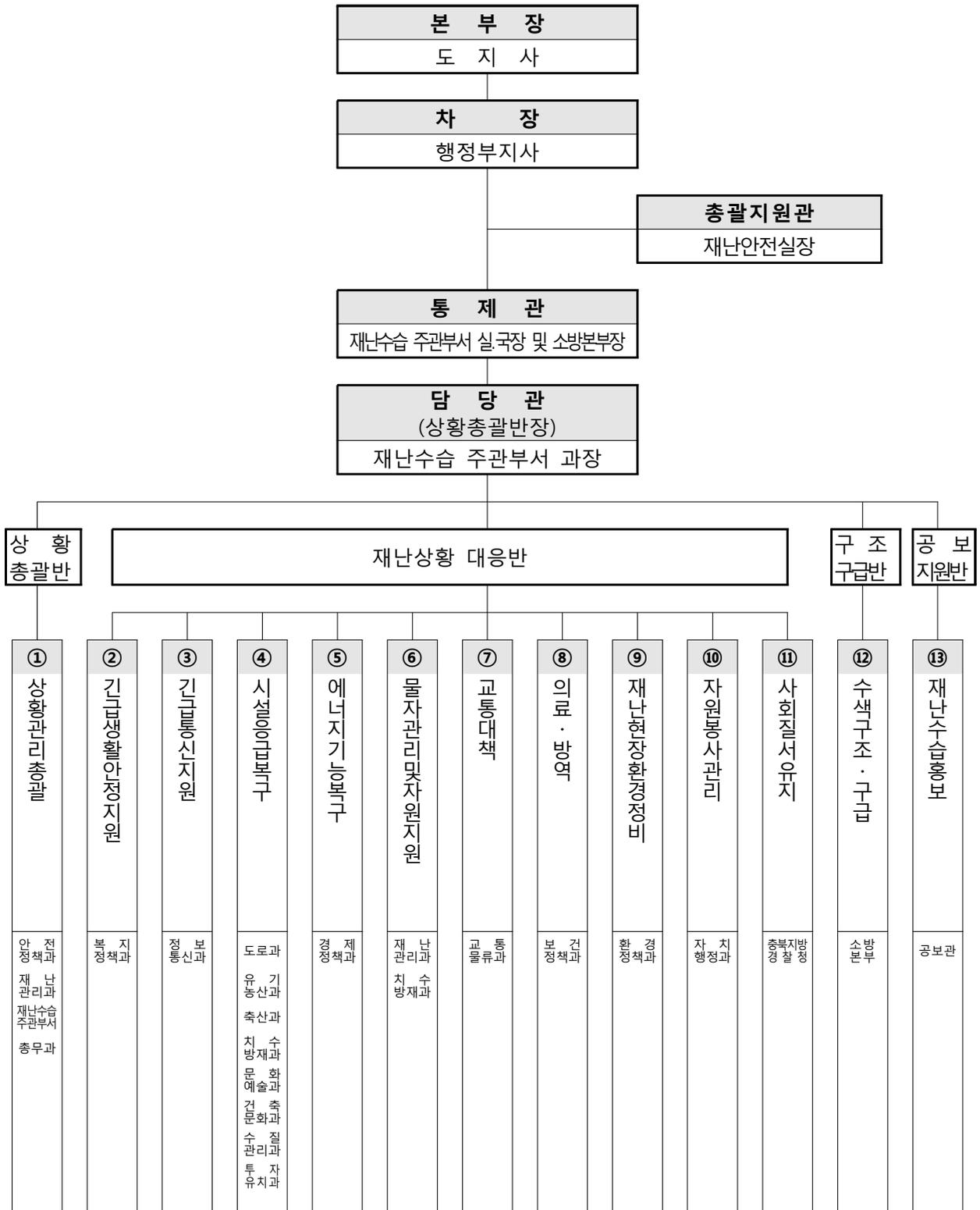
구 분	담 당 업 무
의료·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자원봉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사회질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수색, 구조·구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 재난지역 구급 지원 ○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관계부서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p>관계부서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p>

[별표 6]

사회재난 실무반 기능과 역할 (제6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담 당 업 무		
상황관리 총괄반	재난상황관리 ①재난상황관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지원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 TV방송 모니터링 	재난안전 상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관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재난수습 주관부서
	상황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국회·도의회 관련 보고서 작성 등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행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 상황근무자 복무 단속 	총무과
재난상황 대응반	②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③긴급 통신 지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④시설 응급복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⑤에너지 기능복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⑥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⑦교통대책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두절구간(도로, 수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⑧의료방역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제독 및 기동방역·제독반 편성·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⑨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⑩자원봉사 관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⑪사회질서 유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구 조 구급반	⑫수색, 구조구급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공 보 지원반	⑬재난수습 홍보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도 (제6조제1항제2호 관련)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제19조제2항 관련)

구분	산 정 기 준																		
1. 피해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재난의 피해가 발생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비상단계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 재난으로 본부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 법률상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법 제66조제3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구 분</th> <th style="width: 50%;">지 원 대 상</th> </tr> </thead> <tbody> <tr> <td>① 사람</td> <td>사망, 실종, 부상자 구호금</td> </tr> <tr> <td>② 주택</td> <td>주거용 주택의 파손, 침수 등</td> </tr> <tr> <td>③ 학자금</td> <td>고등학생 학자금 면제</td> </tr> <tr> <td>④ 용자지원</td> <td>농어업용 자금용자, 상환연기, 이자감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용자</td> </tr> <tr> <td>⑤ 세입자 보조</td> <td>세입자 생계안정 지원</td> </tr> <tr> <td>⑥ 경감 및 납부유예</td> <td>국세 지방세 등 납부유예 및 경감</td> </tr> <tr> <td>⑦ 농업시설 복구</td> <td>농업용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td> </tr> <tr> <td>⑧ 공공시설 복구</td> <td>국가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복구비</td> </tr> </tbody> </table>	구 분	지 원 대 상	① 사람	사망, 실종, 부상자 구호금	② 주택	주거용 주택의 파손, 침수 등	③ 학자금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④ 용자지원	농어업용 자금용자, 상환연기, 이자감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용자	⑤ 세입자 보조	세입자 생계안정 지원	⑥ 경감 및 납부유예	국세 지방세 등 납부유예 및 경감	⑦ 농업시설 복구	농업용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⑧ 공공시설 복구	국가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복구비
구 분	지 원 대 상																		
① 사람	사망, 실종, 부상자 구호금																		
② 주택	주거용 주택의 파손, 침수 등																		
③ 학자금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④ 용자지원	농어업용 자금용자, 상환연기, 이자감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용자																		
⑤ 세입자 보조	세입자 생계안정 지원																		
⑥ 경감 및 납부유예	국세 지방세 등 납부유예 및 경감																		
⑦ 농업시설 복구	농업용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⑧ 공공시설 복구	국가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복구비																		
2. 도비와 시·군비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19조제2항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 시 부담률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에 따라 부담한다. 																		
3.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p>가. 사망자·실종자,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자·실종자: 1천만원 2) 부상자: 사망자·부상자 구호금의 50퍼센트 <p>나.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구호: 구호물품 세트 지원 2) 장기구호: 주택이 전파된 경우 60일간, 주택이 반파된 경우 30일간 구호비 지원 3)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kg) 5가마를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금액 4) 세입자 보조: 세대당 입주보조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 지원 																		
4.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p>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 확인 <p>※지원대상: 주택 및 시설물, 농림시설 및 농작물, 축사, 가축, 그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p>																		
5.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p>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p>																		
6. 그 밖의 사항	<p>법 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별표 9]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제22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현장관리관 파견		○		
		유관기관 파견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발령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 해 조 사 및 복구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재난대책본부 회의	회의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제20조제1항 관련)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 내용	피해 발생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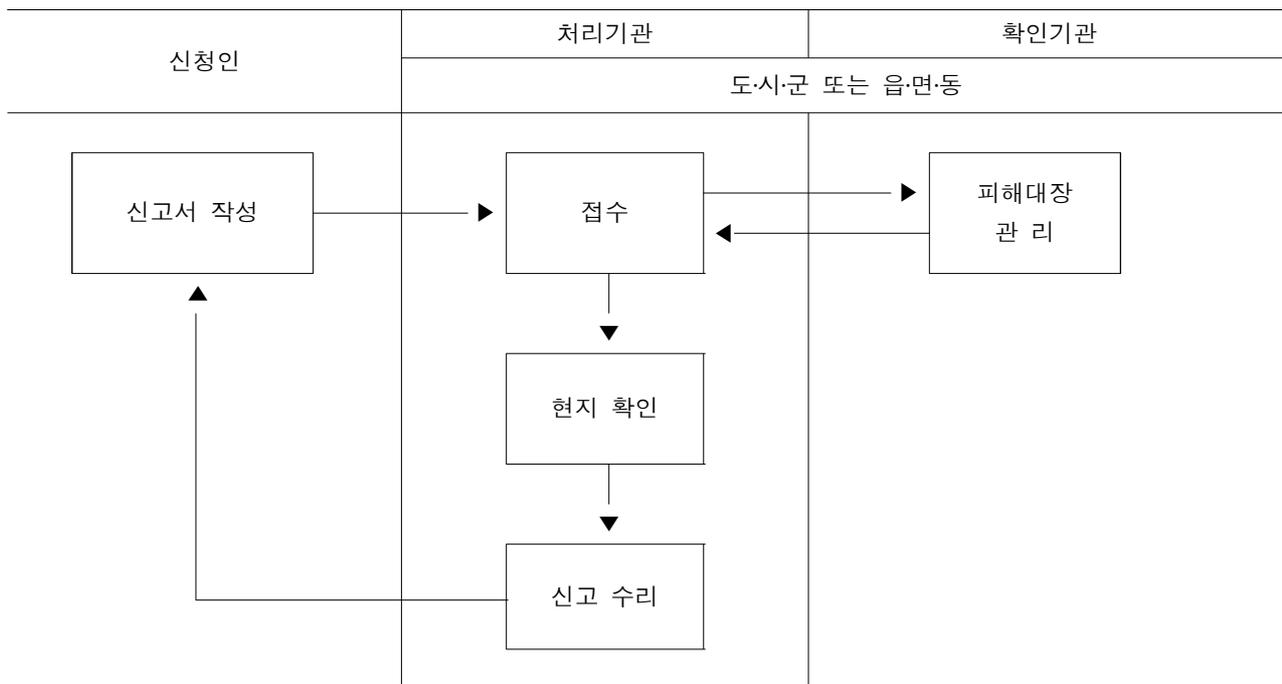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관리번호:]

피해 대장 (제20조제2항 관련)

확 인 자	중앙 직	성명	(인)
	시도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사자	직	성명	(인)

1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	천원

3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